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목적

-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지역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③ 기관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2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만료기간으로 한다.
-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 ③ 계약만료 시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신체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③ 이용자와 본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본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본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본 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⑤ 본 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 본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⑧ 이용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⑨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 전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추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수령한다.

④ 기관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각 호와 같다.

1.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외부활동의 제반사항 경비 (차량유류비, 식재료 구입비, 교통비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5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에 의거하여 재가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제공자 의무)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을 준수한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정결 및 유지관리를 한다.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이나 증세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7.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업무(서비스 관련) 요청에 협조한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이용자 거주지 가정 내
2.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이용자의 급여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지

- 가. 허위의 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을 때
- 나.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기관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기관과의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본 기관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 라.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마.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 바.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2.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 가.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 나.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예고기간 만료 시